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제264회 임시회 (2023. 10. 17.)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아트센터 설치·관리 및 사용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건설위원회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아트센터 설치·관리 및 사용료징수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행정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권 하 나

1. 제출경위

- 가. 의안번호: 23-122
- 나. 제 안 자: 마포구청장
- 다. 제안일자: 2023년 9월 26일(화)
- 라. 위원회 회부일자: 2023년 10월 6일(금)

2. 제안사유

마포아트센터의 사용료 징수 기준을 현실화하고자 조례 일부를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할인 항목 중 다등이 적용 범위 수정 (제13조의3제1항제9호)
- 나. 할인 항목 중 병역명문가 감면혜택 신설 (제13조의3제1항제18호)
- 다. 할인 항목 중 일일이용료 및 개인레슨 형태 제외 신설 (제13조의3제3항)
- 라. 요금 현실화에 따른 센터 사용료 인상 (별표)

4. 관계법령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5. 검토보고

- 동 조례 개정안은 2023년 9월 26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10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마포아트센터의 사용료 징수 기준을 현실화하고자 조례 일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병역명문가 감면혜택 신설에 따른 할인대상 추가 및 다둥이 적용범위 수정으로 구민에게 할인 혜택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임.
- 조문별로 살펴보면 안 제13조의3제1항제9호는 마포아트센터의 시설 사용료 50% 감면 대상을 기존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하기 위하여 다둥이 적용범위를 수정하는 것으로,
 - 서울시의 다자녀 가족의 기준 완화로 다자녀 가구의 정의가 기존의 “막내 나이가 13세 이하인 3자녀 이상 가족”에서 “막내 나이가 18세 이하인 2자녀 이상 가족”으로 정비되었고, 이로 인해 다자녀 가구에 대한 공공요금 감면 요청에 따라 우리구 공공시설 중 마포아트센터에 대한 사용료를 정비하는 것임.
- 안 제13조의3제1항제18호는 마포아트센터의 시설 사용료 50% 감면 대상에 병역명문가 감면혜택 규정을 신설하는 것임.
 - 병무청은 2004년부터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사람이 사회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갖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병역명문가 선정 및 선양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 마포구 또한 2019년 ‘병역명문가 조례’를 제정·시행하면서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하고 있음.

- 그리고, 안 제13조의3제3항은 할인 항목 중 일일이용료 및 개인레슨 형태의 프로그램은 제외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였음.
- 별표는 요금 현실화에 따른 센터 사용료를 인상하는 것으로, 물가상승 등 실질적인 물가를 반영하여 대관료, 프로그램 등 사용료 기준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였음.
- 이와 같이 살펴본 바, 본 개정안을 통해서 공공시설을 활용하려는 다자녀 가족의 이용을 촉진하고 양육비 부담을 경감하여 출산 친화적인 문화 확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또한 「지방자치법」 제156조¹⁾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을 징수하려는 경우에 표준 금액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본 개정안은 관련 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적절한 안건으로 사료됨.
- 아울러, 본 개정안은 다둥이 사용료 할인 요금 감면 대상을 확대하고, 병역명문가 감면할인 혜택을 위한 근거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민의 생활편의증진에 기여하고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만큼 시의적절한 개정안이라 사료됨.
- 다만, 마포아트센터의 사용료 인상 규정 등에 변화가 있는 만큼 구민들의 마포아트센터 이용에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체계적인 홍보 및 서비스 개선 등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1) 「지방자치법」 제156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②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게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공공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시책과 권장)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施策)을 강구하고, 국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보호·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 진흥시책은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한 건전한 생활 문화의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하려면 미리 문화예술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과 계획의 시행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하면 관련 기관 및 단체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 서울특별시 마포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역명문가"란 3대(조부와 그 손자까지의 직계비속)가 모두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쳐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 제2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가문으로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가문을 말한다.

2.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사람 중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 지방자치법

제156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②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게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공공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